

# 기업의 생산기술 유출방지 대책(1)

- (가칭) 산업스파이 방지법 등 특별법 제정 반대 -



황 창

〈인하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변리사〉

## 1. 서설

80년대 냉전종식 이후 국가 또는 기업의 경쟁력이 기술수준에 따라 좌우되는 고도산업사회를 맞으면서 그 동안의 경쟁적 요소가 자원에서 상품으로, 그리고 산업기술정보로 이동되면서 지식산업의 본격적인 경쟁시대를 맞아 국내외 유수기업들이 반도체·자동차·통신기기·항공·바이오산업 등 첨단산업분야의 기반과 신규유망산업 진출을 서두르면서 기반산업기술이나 첨단산업기술을 담은 정보나 고급기술인력, 전문경영인과 같은 고급두뇌인력을 확보하려는 스카우트전이 국내외에서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산업스파이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더욱, 1993년 UR타결에 따른 WTO규제의 출범을 계기로 국제산업질서의 재편과 교역환경의 변화를 맞으면서 국제산업경제의 중심권이 산업기술경쟁체제로 옮겨 오면서 기술인력 이동이 급격히 늘어나 기업은 물론 관련정보기관마저도 산업기술정보의 수집·전파에 혈안이 되어 세계는 지금 첨단산업기술정보전의 격랑속에 휩싸여 있는 느낌이다. 그 대표적인 사건으로 얼마전 파리에어쇼를 계기로 노정된 미·프랑스간 산업스파이 사건이라든가, 독일 유수의 자동차 제작업체인 폴크스바겐사와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사

## 목 차

1. 서설
2. 산업기술의 유출실태
3. 산업기술 유출시의 구제 방법
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대책
5. (가칭) 산업스파이 방지법등 특별법제정
6. 결어

〈고딕은 이번호, 명조는 다음호〉

의 독일 자회사인 아담오펠사간의 산업스파이 사건, 텍사스 소재 일본기업인 출자회사가 항공우주 관련기밀을 일본으로 불법유출하려던 협의로 입건된 사건등은 냉전종식이후 과열되고 있는 국제산업첩보전의 한 단면을 보여준 예이다. 이러한 가운데 예기치 못하였던 IMF 관리체제를 맞아 불가피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 산업구조조정이나 감량 경영과정에서 대량의 첨단산업기술보유자 등이 고용의 정리나 해고의 불안으로 부터 탈출하기 위해 전직이나 창업의 기회를 찾고 있는 임여자원으로 인한 공급여력이 생겨 국내외 스카우트전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산업기술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국내외 경쟁사들의 스카우트 열풍이 가열되고 있어 그 진정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2. 산업기술의 유출실태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산업첩보활동의 천국이라고 한다. 관계당국에 의하면 국내거주 외국인 가운데 400명 정도를 요주의 인물로 분류하여 감시하고 있다고 한다. 그들은 대부분 위장취업·미인계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산업기술정보를 빼내어 가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이와같이 기술정보를 탐지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세계적인 기업들은 대부분 한국인을 전문경영인으로 찾고 있다. 예를들면 모토로라·IBM·듀퐁·GE·AT&T 등이 그렇다. 이와같이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80% 내지 90%가 인력스카우트로 인재의 수급을 조절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면에서는 우리나라의 첨단산업기술정보나 축적된 경영기술에 관한 노하우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된다.

더욱 최근 국내시장 개방을 틈탄 외국기업이나

우리의 첨단산업기술의 도입을 꾀하고 있는 해외 경쟁사들이 고급기술인력 스카우트에 가세하고 심지어는 이들의 스카우트를 대행하는 전문 “헤드 헌터” 등이 속출하고 있고 또 성업중이라고 한다.

워드 하웰(Ward Howell) 같은 세계적인 인력 공급회사 등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국내에서도 스타커뮤니케이션·HT컨설팅·탑비즈니스·아톰에이스 등 70여개사가 인력스카우트를 대행하는 전문 “헤드 헌터” 업으로 성업 중이거나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고 한다. 이와같은 “헤드 헌터” 업은 노동의 유연성·직업선택의 자유·독점의 사회적 폐해의 방지 등 밝은 면도 있으나 경쟁사의 지적재산인 산업기술정보의 누출·남의 사람을 빼내는 등의 부도덕한 어두운 면도 있다. 그러나 이 어두운 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피해사건이 지금도 세계도처에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영업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삼성·LG반도체가 자체개발한 기업특유의 반도체 첨단기술정보를 빼내기 위하여 양사의 전·현직 연구원에 의해 전자제품업체인 “(주)KSTC”와 반도체 회로설계회사 “도에스택”을 설립하여 삼성·LG양사의 전·현직 연구원을 부정스카우트하여 이들로 하여금 차세대 컴퓨터인 펜티엄Ⅱ급(686) 이상 PC에 이용되는 첨단반도체 소재인 64메가 D램의 회로도 설계관련서류 등 반도체에 관한 고급기술정보를 빼내 대만의 유명 반도체회사인 NTC에 팔아넘긴 협의로 현재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산업기술 등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1992년 12월 15일부터 영업비밀 보호법을 부정경쟁방지법 속에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5백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기술상의 비밀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전체기

업의 8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데 반해 산업 기술정보관리체제를 갖추어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기업은 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산업기술정보에 대한 법적분쟁을 경험한 업체도 29%에 이르고 있었다. 그 중 14%가 전·현직 종업원에 의해 유출되고 8%가 기업의 내부자와 제3자의 공모에 의해 유출되었으며 나머지 7%만이 순수 외부인에 의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나 기업의 산업기술정보가 전현직종업원이나 또는 이들과 관련을 맺은 제3자와의 공모유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이 산업기술정보에 대한 인적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단적으로 보여 준 사례들이다. 따라서 기업은 일상적인 보안규정 외에 인적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같이 인적관리로 부터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산업기술정보의 관리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난 1992년 12월 15일부터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여 영업비밀보호규정을 신설, 운용하고는 있으나 각 기업의 관리체계의 미비와 관리기법의 미숙·고위 관리층의 관심소홀 등으로 법적 보호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업은 철저한 인적 관리와 아울러 경쟁사의 산업기술정보에 무임승차하려는 부도덕한 반윤리적인 범죄행위로부터 산업기술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 기업은 시급히 자기의 기업문화에 알맞는 최적의 관리모형을 개발하여 정착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며 정부도 보다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법적·제도적보완을 서둘러 사정차원에서 산업기술정보의 종합적인 협력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아가는 일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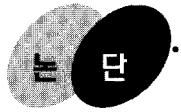
### 3. 산업기술유출시의 구제방법

전술한 제반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 의해서도 “헤드 헌터” 업의 인력 스카우트를 통한 산업기술의 유출이나 산업기술보유 기업체의 연구원들의 자의적 유출행위에 의해 계속 산업기술정보가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에 산업기밀침해행위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청구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침해행위에 제공된 시설의 제거 등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권·신용회복 청구권 기타 민사소송법상의 침해행위 금지 가처분신청이라든가 민법상의 부당이득반원 청구 등 민사적 구제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한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할 수 있는 부정경쟁방지법이 1992년 12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이 치열한 산업스파이전에서 산업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므로 정부는 우선 이 법의 벌칙규정을 대폭강화하는 법개정을 통하여 산업스파이에 의한 기술침해방지를 피하여야 할 것이다.

### 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대책

앞으로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기술정보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산업계는 물론 정부도 가일층 입진태세를 갖추어 나아가야 할 때이다.

산업전반의 기술정보보안의식이 더 제고되어야 하고 정부 또한 법적·제도적인 산업기술정보 관리책마련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미국이 기술정보보안을 기업경영의 3대축으로 삼고 1천억달러 정도의 예산을 투자한 것은 산업기술정보가 국



가산업경제의 운명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직시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비단 정부만의 인식뿐만 아니라 산업체에서도 보다 강력한 보호의지를 가지고 대응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카터필라” 같은 회사는 모든 해외와의 교신을 암호로 하고 있고 “듀퐁”은 전직 FBI방첩책임자를 특채했다고 한다. 일본의 경우도 “미쓰비시그룹” 같은 재벌은 자그마치 200억달러를 들여 전세계에 뻗어있는 계열기업·소비자·공급자를 연결하는 국제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세계시장을 “첨단컴퓨터”로 관리하는 단계에 들어갔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체나 정부도 경쟁력 있는 반도체와 같은 첨단기술산업을 계속 비교우위산업으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관리모델과 선진법제를 확립하여 세계 초일류 산업기술로 발전시켜나아가기 위한 총체적 역량을 모아 대응해 나아가야 할 때이다. 따라서 우선 기업은 보유하고 있는 경쟁력 있는 첨단산업기술비밀정보를 경쟁업체나 해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인적·정보적 관리대책 등을 서둘러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가. 기업의 산업기술관리대책

기업은 보유생산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기술을 직접연구·개발하고 또 그 개발된 기술을 관리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연구원·관리자·사용자 등에 대한 사람관리와 관리대상인 산업기술정보의 비밀유지 그리고 사람과 기술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체계의 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

##### (1) 인적관리

###### (가) 기업 내부인등에 의한 기술유출의 방지

###### ① 연구원 등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

첫째, 채용후보자에 대해서는 면접 등을 통해

높은 도덕성·인성·성실성·직업관·사명감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여 기업윤리에 투철하고 기업문화에 적합한 인재를 발굴 채용한다. 왜냐하면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개인의 기술력이나 영업력의 향상, 다양화된 취업패턴과 산업구조의 다양화, 더욱 우리의 경제가 IMF한파로 인한 대량실업사태에서 나오는 공급의 잉여로 고용인구의 이동이 날로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경쟁기업의 기술노하우 등을 입수하기 위한 부당 인력 스카우트·위장취업이 급증하고 있고 또 이들에 의해 핵심원천기술이 여과없이 유출되고 있기 때문에 신원조회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철저히 확인한 후 채용여부를 결정한다.

둘째, 채용할 때에는 재직시 취득한 산업기술정보에 대해서는 회사의 승낙없이는 외부에 공개하거나 자기 스스로가 사용하지 않는다는 산업기술정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되 비밀로 지켜야 할 산업기술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셋째, 채용후에는 종업원이 경쟁관계에 있는 단체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거나 경쟁업을 목적으로 한 업무에 종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승락을 받지 아니하면 안된다는 내용의 겸업금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넷째, 종업원이 퇴직을 할 때에는 퇴직 의사를 밝힌 종업원에게 재직시 취득한 산업기술정보의 명세를 제시하여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을 알고 퇴직후 비밀의 유효기간동안 산업기술의 사용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경업금지계약을 약정한다. 이와같은 퇴직자와의 경업방지의무를 부과하는 약정에는 적어도 i) 사용자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사업이익과 사용자의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제한인지, ii) 종업원의 입장에서 생계유지를 위한 합법적인 노력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과도한 억압이 아닌 합

리적인 제한인지, iii) 공공복리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제한인지 등의 기준이 준수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그 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i) 서면으로써, ii) 계약의 일부로 체결되어야 하며, iii) 경업금지라고 하는 경제활동의 제한조치에 의해서 받은 제약에 대한 보상적 성격과 경업금지기간 동안의 비밀유지에 대한 대가적 성격을 가진 명예수당이나 기밀수당과 같은 유효한 대가의 지급이 있어야 하고, iv) 제한이 부과되는 기간이나 지역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v) 사용자와 피용자 모두에게 공평한 것이어야 한다. 또 vi) 공공복리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vii) 비밀로 준수하여야 할 산업기술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고 제한을 가하는 직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기업이 종업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직할 수 밖에 없는 한계상황에 처했을 때에는 그 전직희망자에게 재직시 취득했던 산업기술비밀을 전출회사에서 사용 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계약서의 징구는 물론 그 전직회사에 자사의 산업기술비밀과 관련된 보직에 임명하거나 그 전출자로 하여금 그 기밀기술이 유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주의문을 보내어 경각심을 줌은 물론 훗날 그 전직자 및 전입회사에 의해 산업기술기밀이 무단사용되었을 경우 산업기술 침해행위가 구성되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산업기술정보의 특기할만한 변화는 종전의 생산현장에서 생산기술을 직접 사용한 일반종업원이나 기타 기밀기술 관리담당자에 의해 유출되는 경우 보다는 당해 기술을 직접 연구개발하고 있는 연구원이나 임원급 이상의 관리층 내지는 경영층에 의한 유출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같이 연구원이나 임원급 이상에 의한 기술유출증

가현상은 연구원은 개발된 기술이 자기의 일반적인 지식에 의해 창출된 소위 일종의 직무발명과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 의식하고 있는 면이 없지 않고 또 그 기술적 창작을 완전히 소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기술내용이 머리속에 메모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기록자료나 타인의 도움 없이도 또 관리체계로 부터도 자유롭기 때문에 연구원의 결심에 따라 얼마든지 대외유출이 용이하다. 특히 앞에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개발된 기술분야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의 사용까지는 어떠한 명분이나 방법으로든 제한을 가할 수 없다는 단선적인 인식에 기인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이 또한 연구원의 기술유출사건증가에 한 몫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 이사급 이상 고위관리층에 의한 비밀기술유출의 증가현상은 이사급 이상의 임원이 실질적으로 회사의 모든 기술정보를 장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신임을 바탕으로 하여 선출된 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직원에 비해 그리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기업들은 이들에 의한 비밀기술유출 등은 아예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관대하기 때문에 관리를 비교적 철저히 하고 있는 직원에 비해 의외로 기술의 유출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특수직에 있는 연구직이나 임원급 이상의 관리층에 대해서도 대외유출방지를 위해 일반직원이상의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여섯째, 기타 종업원의 불만에 의한 산업기술정보의 누설을 방지하기 위한 고충처리센터의 설치·산업기술정보의 신고제 및 보상제의 도입·산업기술정보유출 등의 사고에 대한 조치 등도 인적관리의 간접적 방법이 될 수 있다.

## ② 거래자 등에 대한 관리

첫째, 거래전에 상품기술보호에 관한 계약서 혹은 문서 등을 징구하고, 둘째 거래할 때에는 산업기술정보의 비밀유지에 관한 특별약정을 해야 한다. 즉 계약기간동안은 경쟁사업금지를 의무화 한다. 셋째, 거래가 끝난 후에는 당해 산업기술의 비밀유기기간내에는 산업기술보유자의 영업권내에

서는 동일기술에 의한 제조업을 스스로 경영하거나 타인의 경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다. 여기에서 거래자라 함은 산업기술 보유자의 방계회사·계열회사·하도급 관계에 있는 회사·제휴회사 기타 협력관계에 있는 업체와 변리사·변호사·기술고문 또는 자문, 기타 조력자를 말한다. <다음호에 계속>

발특9803

## 제8기 개인발명가과정 연수안내

국제특허연수원에서는 개인발명가의 발명능력 함양을 통한 기술개발 유도촉진과 개발된 기술에 대한 권리취득 및 상품화 능력제고를 위하여 제8기 개인발명가과정 연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분들의 참가바랍니다.

### - 아 래 -

1. 과정명 : 제8기 개인발명가과정
2. 연수기간 : '98. 4. 13(월) ~ 4. 17(금) [4박 5일]
3. 연수장소 : 특허청 국제특허연수원(대전시 유성구 가정동 121-1 연구단지)
4. 계획인원 : 60명
5. 교과목 : 산업체산권제도개요, 명세서작성방법, IPC분류 및 서치, 산업체산권라이센싱, 권리침해대응방안, 특허기술사업화방안, 중소기업창업지원제도, 산재권정보검색요령 등
6. 연수신청 및 등록
  - 신청기간 : '98. 4. 4(토)까지
  - 신청방법 : 연수참가신청서(별첨양식)를 작성하여 우편이나 FAX[(042)862-5524]로 신청
  - 연락처 : 042)861-1984[담당: 김선진]
  - 등록일시 : '98. 4. 13(월) 10:00 ~ 11:00
  - 준비사항
    - 수강료(교재포함) : 126,000원
    - 식 대 : 29,000원(2,300원 × 13식)
    - ※ 기숙사 사용은 무료